#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405

발의연월일: 2022. 4. 26.

발 의 자:정성호·김두관·박상혁

김병욱 · 김영진 · 김성환

김정호 · 임종성 · 이동주

양경숙 · 용혜인 · 김남국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소득지급자')에게 비과세·면세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소득지급자는 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않고 일반적인 국내 세법상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함.

통계자료에 따르면 해외로 지급된 이자·배당·사용료(수동소득) 금액은 2017년 48.3조원에서 2020년 54.8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평균 원천징수 실효세율은 2017년 10.7%에서 2020년 10.0%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이처럼 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 거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래 대가를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사업소득은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사용료는 과세될 수 있어 거래의 실질에 맞게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

그러나 현행법상 소득지급자가 비거주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어 비거주자가 제출한 형식적 자료만 가지고는 비거주자가 실질귀 속자에 해당하는지, 소득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득지급자가 실질에 맞게 원천징수하는데 도움을 주고, 원천 징수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한 비거주자가 국세청의 보정요구에 불응하 는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정당한 과세권을 지키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비거주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확인 또는 소득구분의 파악을 위해 소득지급자가 비거주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6조의2제3항, 제156조의6제3항).
- 나. 경정청구한 비거주자가 국세청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 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당초 원천징수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함 (안 제156조의2제7항, 제156조의6제7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54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6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에 실질귀속자의 확인 및 원천소득의 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수 있고, 소득지급자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은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에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156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소득지급자는"을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지급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청구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

간은 제8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제6항에 따른 보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정 요구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는 적법한 것으로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56조의2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8 항까지"로 한다.

제156조의6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에 실질귀속자의 확인 및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완 요구를 할 수 있 고,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은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 투자기구는 이에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156조의6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원천징수의무자는"을 "제3항에도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청구 내

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8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6항에 따른 보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정 요구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는 적법한 것으로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56조의6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아 정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 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 용 신청) ①・② (생 략) 용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에 실질귀속 자의 확인 및 원천소득의 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출된 서 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소득지급자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은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 자기구는 이에 성실하게 협력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지 ③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 급자는-----세 · 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 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 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

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 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 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 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 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 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 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u>⑤</u> 제4항
제4항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
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청구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청구인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 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비과세 · 면 제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 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 · 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 의무와 경정청구의 방법 · 절차 등 비과세 · 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성하는 바에 따라 보성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긴
은 제8항에 따른 기간에 산업
하지 않는다.
⑦ 제6항에 따른 보정 요구에
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정 요
구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정당
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
출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원천
징수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경
정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u>⑧</u> 제5항
<u>⑨</u> 제1항부터 제8항까지

한다.

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 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② (생략)

<신 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 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 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 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 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

> 자 또는 국외투자기구에 실질 귀속자의 확인 및 국내원천소 득의 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완 요구를 할 수 있고, 원천 징수의무자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은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 자기구는 이에 성실하게 협력 하여야 한다.

<u>④</u> 제3항에도 물구하고 원천장
<u>수의무자는</u>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u>④</u>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 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 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 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 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 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 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 을 청구할 수 있다.

<u> </u>
<u>제4항</u>
<u>제4항</u>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
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청구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청구인에게 30일 이내의
<u> </u>

-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 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 방법・절차 등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
은 제8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
하지 않는다.
⑦ 제6항에 따른 보정 요구에
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정 요
구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정당
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
출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원천
징수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경
정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
<u>⑨</u>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은 대통령령으로 >	정한다.
------------	------